

Ewha Law Review 투고 지침

제정 2010년 9월 1일

개정 2015년 8월 1일

개정 2012년 12월 3일

개정 2013년 6월 28일

개정 2016년 7월 25일

개정 2020년 12월 1일

개정 2021년 3월 4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Ewha Law Review에 게재될 원고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자격)

① Ewha Law Review에 논문 등을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2. 석사과정 재학생 이상의 대학원생
3. 변호사 자격 소지자(판사, 검사 포함)
4. 기타 편집위원회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인정한 자

② 편집위원회는 전항의 자격과 상관없이 논문 등을 청탁할 수 있다.

제3조(원고의 종류)

① Ewha Law Review에 투고할 수 있는 글(이하 ‘원고’ 라고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논문
2. 판례평석
3. 기타 서평
4. 번역
5. 학술정보

② 원고의 성격에 따라 별도의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4조(원고의 구성)

① 원고의 표지에는 원고의 종류, 제목, 필자의 인적 사항(성명, 소속, 직책), 연락처(전자메일 주소) 및 초록을 기재한다. 원고의 제목은 본문의 언어로 한다. 소속 및 직책은 현직만을 기재하며 표기는 아래의 예시에 따른다.

1.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2기
2.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3. 법무법인 이화 변호사

② 저자 인적사항의 각주는 *표시로 한다. 표기는 아래의 예시에 따른다.

1. 김이화*
2. Kim Ewha*

③ 외국어 논문의 경우 필자의 인적사항은 해당 외국어로 표기한다. 표기는 아래의 예시에 따른다.

④ 번역을 제외한 원고의 경우에는 초록을 작성한다. 표지의 초록은 본문의 언어로 한다. 국문원고의 경우에는 영문초록을 참고문헌 뒤에 첨부하고, 외국어 원고의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참고문헌 뒤에 첨부한다.

⑤ 번역의 경우에는 초록 대신 역자해제를 작성한다.

⑥ 초록 또는 역자해제의 분량은 A4용지를 기준으로 1매 이내로 한다.

⑦ 원고의 핵심내용을 지칭하는 국·영문 주제어를 5개 내외로 첨부한다. 영문 주제어의 경우 첫글자를 대문자로 한다.

제5조(원고의 세부 작성요령)

① 원고는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② 원고 본문의 분량은 A4용지를 기준으로 10매 이상 40매 이하로 한다.

③ 본문은 국문원고의 경우 글자 모양 휴먼명조체, 글자 크기 12포인트, 줄간격 160으로 하며, 영문원고의 경우 글자 모양 Times New Roman, 글자 크기 13포인트, 줄간격 150으로 한다.

④ 각주의 경우 글자모양은 본문과 동일하게 하고 글자크기는 9포인트로 한다.

⑤ 목차는 큰 제목부터 I, 1, (1), 1), 가, (가), 가)의 순서로 작성한다.

⑥ 차례의 경우 I, 1의 순서로 작성한다. 그 이하는 생략한다.

제6조(인용방법)

① 본문의 표기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한자 또는 외국어로 표기한다.

1. 서적, 논문 및 문헌의 문장 인용은 “ ”, 용어 및 강조는 ‘ ’로 표기한다.

2. 법령의 경우 아래의 예시에 따른다.

가. 법령은 처음 등장한 경우에만 「」로 표기한다.

예시: 「민법」, 민법 제4조

나. 법령의 공식명칭이 길어서 표시하기가 번거로울 경우 법령이 처음 나올 때에 공식명칭(이하 ‘OO’ 이라고 한다)의 형식으로 약칭을 특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공식명칭 대신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다. 외국법령은 한글로 법령명칭을 적고, 괄호 안에 외국어로 표기한다.

예시: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라. 협약이나 조약의 경우, 그 명칭을 원문으로 표기하거나 한글로 표기한 후 괄호 안에 약자로 표기한다.

예시: 세계지식재산권기구저작권조약(WCT), UNIDROIT 조약

마. 영문초록의 법령명 표기는 대문자로 표기하고, 법제처 국가 법령정보센터의 법령명을 준수한다. 조문은 조, 항, 호, 목 순서대로 Article 2.1.e.와 같이 표기한다.

예시: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2.1.e.

3. 영문표기는 아래의 예시에 따른다.

가. 최초의 경우: 한스 켈젠(Hans Kelsen), 법철학 (Rechtsphilosophie), 개념(concept)

나. 두 번째 이후: 한스 켈젠, 법철학, 개념

② 참고문헌의 표기 순서는 아래의 예시에 따른다.

1. 국문원고의 경우 아래와 같다.

I. 국내문헌

1. 판례
2. 법률안
3. 서적 및 논문
4. 보고서
5. 전자자료 및 온라인 기사

II. 외국문헌

1. 판례
2. 법률안
3. 서적 및 논문
4. 보고서
5. 전자자료 및 온라인 기사

2. 영문원고의 경우 아래와 같다.

I. Cases

II. Statutes

III. Legislative Materials

IV. Books, Reports, and Other Nonperiodic Materials

V. Periodical Materials

VI. The Internet, Electronic Media, and Other Nonprint Resources

VII. Foreign Materials

③ 국문 원고의 경우 각주 및 참고문헌의 표기는 아래의 예시에 따른다.

1. 판례의 경우 아래 표기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괄호부분의 출처는 생략할 수 있다.

가. 한국

- i.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 ii. 대법원 2010. 8. 25. 자 2008마1541 결정.
- iii. 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8헌바61 결정.
- iv.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7. 10. 자 2008카합822 결정.

나. 외국

- i. 미국: Jackson v. Metropolitan Co., 348 F. Supp. 954(3rd Cir. 1973).
- ii. 독일: BGHSt 36, 27f.
- iii. 프랑스: Civ., 18 nov. 1895, D., 1896. 1. 16.
- iv. 일본: 最高裁平成13年4月20日判決.

2. 법률안의 표기는 아래의 예시를 따른다.

예시: 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23350)」, 국회의안정보시스템(제19대 국회), 발의연월일: 2012. 10. 30.

3. 서적은 [저자(출판연도)], 『[서적 이름]』, [출판사], [참고한 면]. 으로 표기한다.

예시: 송덕수(2021), 『신민법강의』, 박영사, 137면.

이재상, 조균석(2021), 『형사소송법』, 박영사, 7면.

앞의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 앞의 글. 로 표기하되, 인용한 면이 다른 경우, 참고한 면을 같이 표기하여 [저자], 앞의 글, [참고한 면]. 으로 표기한다. 동일 저자의 문헌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저자(출판연도)], 앞의 글, [참고한 면]. 으로 표기한다. 저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저자) 외(출판연도)], 앞의 글, [참고한 면]. 이라 적는다.

예시: 송덕수, 앞의 글, 88면.

송덕수(2021), 앞의 글, 95면.

이재상 외(2020), 앞의 글, 67면.

4. 논문은 [저자(출판연도)], 「논문명」, 『논문이 수록된 학술지명』, [학술지 호수], [참조 면수]. 로 표기한다. 학위논문의 경우에는 [저자(출판연도)], 「논문명」, [학위수여기관], [학술지 호수], [참조 면수]. 로 적는다.

예시: 김문현(2005),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의 구조상의 문제와 그 개선에 관한 일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0권 제1호, 19면.

김문현, 앞의 글, 13면.

장지영(2021), 「부동산 세제의 위헌요소에 관한 연구 : 2020년 주택 관련 개정 세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8면.

5. 보고서의 경우 아래의 예시를 따른다.

예시: 신경아 외(2013),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임금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2면.

6. 자료집의 경우 아래의 예시를 따른다.

예시: 이수정(2004), 「경찰에서의 소년범 다이버전을 위한 재범위험성 평가절차」, 『청소년 선도 및 전과자 줄이기 관련 세미나 자료집』, 5면.

7. 전자자료 중 온라인 페이지의 경우에는 [온라인 페이지명], [url] (접속일 [접속일자].)으로 표기한다. 검색결과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페이지 또는 검색기관명], 검색어 “[검색어]”, 접속일 [접속일자], [url] 로 표기한다.

예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http://law.ewha.ac.kr/> (접속일 2010. 8.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검색어 “한복”, 접속일 2021. 3. 3., <https://encykorea.aks.ac.kr/Search/List>

8. 온라인 기사 또는 칼럼은 [필자명], 「[기사명]」, 『수록매체명』, [마지막 수정일], [url] (접속일 [접속일자].) 라고 표기한다.

예시: 김유경, 「중국 원도 O/S 불법복제’ 이례적 강경대응」, 『전자신문』, 2009. 8. 25.,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9820136> (접속일 2012. 12. 10.)

9. 외국문헌의 표기는 아래 영문 원고의 표기를 따른다.

④ 영문원고의 경우 각주 및 참고문헌의 표기는 아래의 예시에 따른다.

1. Cases

가. 영문 판례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Plaintiff/ Appellant/ Applicant] v. [Defendant/ Respondent], [Citation].

예시: United States v. Christmas, 222 F.3d 141, 145 (4th Cir. 2000).

나. 국문 판례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예시: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of 26 April 1996, 96Da1078.

2. Books

[Volume Number, if any] [AUTHOR’ S NAME], [TITLE OF THE BOOK] [Page Number] [(Publisher’ s Name Year of Publishing)].

예시: GLANVILLEWILLIAMS, LEARNING THE LAW 69 (Sweet & Maxwell 2014). Multiple Editions, Same Publisher인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AUTHOR’ S NAME], [TITLE OF THE BOOK] [Page number] [(Edition Year of Publishing)].

예시: FRANCIS A. CAREY, ORGANIC CHEMISTRY 310 (6th ed. 2006).

3. Periodical Materials

Law review 및 Journal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Author' s name], [Title of the article], [Journal Volume Number] [NAME OF THE JOURNAL (abbreviated)] [Starting Page of the Article], [Pages Cited] [(Year)].

예시: Elizabeth F. Emens, Integrating Accommodation, 156 U. Pa. L. Rev. 839, 894 (2008).

Online newspaper article인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예시: Pamela Mendels, A Care of Spam and Free Speech at Intel, N.Y. Times (Dec. 11, 1998), <http://www.nytimes.com/library/tech/98/12/cyber/cyberlaw/11law.html>.

4. The Internet, Electronic Media, and Other Nonprint Resources

Online-only sources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NAME OF WEBSITE], [URL] [(last visited Date)].

예시: BEN & JERRY' S HOMEMADE ICE CREAM, <http://www.benjerry.com> (last visited Oct. 6, 2008).

Dynamic web pages, such as blogs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Name of the author], [Name of the article], [NAME OF THE WEBPAGE] [(Date of access, time of access)], [URL].

예시: Asahi Shimbun, A-Bomb Disease Ruling, JAPANESE L. BLOG (Mar. 27, 2009, 9:29 PM), <http://japaneselaw.blogspot.com>.

Online sources that preserve original pagination, such as a PDF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Name of the author], [Name of the article], [Journal Volume Number] [Name of the Journal(abbreviated)] [Starting Page of the Article], [Pages Cited] [(Year)], [URL].

예시: Kenneth W. Simons, Retributivists Need Not and Should Not Endorse the Subjectivist Account of Punishment, 109 Colum. L. Rev. Sidebar 1, 3 (2009), http://columbialawreview.org/wp-content/uploads/2009/03/1_Simons.pdf

⑤ 표와 그림은 중앙 상단에 ‘[표 1] 제목’ , ‘[그림 1] 제목’ 의 방식으로 일련번호와 제 목을 표시하고, 표와 그림의 출처는 각주로 표시한다.

⑥ 재인용은 아래에 따른다.

1. 국문 원고의 재인용은 원문과 재인용 문헌 사이는 콜론(:)으로 연결하고 재인용이라고 표기한다.

예시: 노동부(2007), 노사관계선진화 입법 설명자료, 79면 : 노동법실무연구회(2010), 『근로기준법주해Ⅱ』, 박영사, 278면에서 재인용.

2. 영문 원고의 재인용은 [원문 AUTHOR' S NAME], [원문 TITLE OF THE BOOK] [원문 Page number] [(원문 Edition Year of Publishing)] in [원문을 인용한 문서의 AUTHOR' S NAME], [원문을 인용한 문서의 TITLE OF THE BOOK] [(원문을 인용한 문서의 Edition Year of Publishing)] 로 표기한다.

예시: O ‘Connell, R, From Fixed to Mobile Internet: The Morphing of Criminal Activity On-Line, in Peter Kennison, Child Sexual Abuse and the Internet: Tackling the New Frontier 44 (M. Calder ed., Lyme Regis, Dorset, Russell House Publishing, 2003).

⑦ 각주에 문헌을 인용할 경우

원래 비정규직이었던 여성노동자들은 특히 경력단절의 피해가 심하다.

“출산을 함으로 해서 내가 들어가서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쉬었다 나오더라도 내가 그동안 일했던 거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신입사원처럼 입사를 하는 거예요.” (학습지교사) - 신경아 외, 앞의 책, 425면.

⑧ 다수의 자료를 병렬적으로 인용하는 경우, 원문 사이는 세미콜론(;)으로 연결한다.

예시: 석광현(2001),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박영사, 제1권, 259면 이하 ; 석광현(2012),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박영사, 제5권.

제7조(원고접수)

원고는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전자메일(ewhalawreview@gmail.com)로 제출한다.

제8조(개정 및 시행)

①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② 개정된 규정은 시행일은 부칙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Ewha Law Review 연구윤리규정

제정 2011년 8월 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wha Law Review에 투고되는 연구논문·번역문·판례평석 등의 심사에는 있어 비윤리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저술된 연구논문의 게재를 방지하고, 연구윤리의 확보에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윤리)

Ewha Law Review에 투고되는 논문은 다음과 같은 투고윤리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논문은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서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이미 게재되지 아니한 것 이어야 한다.
2.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3. 다른 사람의 논문의 일부를 인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3조(표절)

다른 사람의 논문의 일부를 인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경우 이는 표절에 해당한다. 다만, 기존의 논문·교과서 등에 게재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이해되는 경우에는 그 인용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이중게재)

본인의 기존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사용하는 경우 이중게재에 해당한다.

다만, 본인이 기존에 발표한 논문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면서 새로운 학술적 논점을 추가 시켜 분석하는 것은 이중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5조(표절 및 이중게재의 판정)

해당 투고 논문의 심사시 표절 또는 이중게재의 의혹이 있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

의 결정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및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 표절 또는 이중게재의 판정을 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연구윤리 위반행위 제보)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조사)

연구윤리위원회는 제2조 내지 제4조 위반행위를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표절 또는 이중게재의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
2.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사실의 공지
3. 기타 적절한 조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wha Law Review 심사규정

제정 2011년 5월 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Ewha Law Review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심사)

원고접수가 마감되면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가 심사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원고작성 요령에 맞지 않거나 국·영문초록, 참고문헌 등 중요한 부분이 빠져 완성된 논문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또는 Ewha Law Review의 성격에 비추어 부적절한 내용을 다루는 경우에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제3조(심사위원의 자격 및 선정)

①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2. 변호사 자격 소지자(판사, 검사 포함)
3. 박사학위 소지자
4. 기타 편집위원회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인정한 자

②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1. 해당 논문에서 다루는 주제와의 관련도
2. 해당 분야에서의 연구실적
3. 학계 또는 실무계에서의 인지도
4. 공정한 심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여부

③ 편집위원이 논문 등을 투고한 경우, 해당 편집위원은 해당 논문 등의 심사위원 선정 및 최종심사결과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4조(논문심사의뢰)

① 편집위원회는 각 투고원고에 대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각 심사위원에게 심사원고를 송부한다. 다만 본 편집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제출된 논문 및 논문 이외의 글 등에 대하여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심사논문에는 투고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서는 안 되며, 이미 기재되어 있는 경우 에는 이를 삭제한다.
- ③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투고논문에 대한 심사)

- ① 심사위원은 투고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송부한다. 심사의견서는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 및 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 1. 수정이 필요 없을 때: ‘수정 없이 게재’
 - 2. 간단한 수정이 필요할 때: ‘수정 후 게재’
 - 3. 대폭적 수정 후 재심사가 필요할 때: ‘수정 후 재심사’
 - 4. 동일한 내용으로는 게재가 불가능할 때: ‘게재 불가’
- ② 투고논문의 심사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 1. 주제설정의 창의성과 적절성
 - 2. 연구관점의 참신성
 - 3. 연구방법의 적절성
 - 4. 연구결과의 학술적 완성도
 - 5. 학계에의 기여도

제6조(심사판정과 통보)

- ① 심사위원간에 심사의견이 다를 때에는 다수의견에 따른다. 3인의 심사의견이 모두 다른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 ② 전항의 경우 심사의 공정성을 우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모든 투고자에게 각 심사위원이 작성한 심사의견서를 익명으로 처리하여, 편집위원회의 최종 심사결과와 함께 통보한다.

제7조(심사 후 원고의 수정)

- ①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지적 또는 수정요청사항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답변 및 수정내용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작성 언어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투고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어법에 맞게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최종원고에 대한 교정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결정하며, 필요한 때에는 교정쇄를 투고자에게 송부하여 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논문게재예정증명서의 발급)

편집위원장은 Ewha Law Review의 발행 이전에 최종적으로 게재가 결정된 원고에 대하여 투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한다.

제9조(별쇄본)

채택된 기고자의 신청이 있으면 기고자의 비용 부담 하에 별쇄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익명성 보호)

- ① 결정된 심사위원의 명단은 발표하지 않는다.
- ② 원고 심사는 익명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비밀유지의무)

논문 등의 심사に関여하는 자 또는 관여하였던 자는 논문 등의 제출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개정 및 시행)

- ①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 ② 개정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한 다음날로부터 시행한다.